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3. 1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총무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총무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일수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2조의2에서는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13조 및 별표 4에서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채용 시 연가가산 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현행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별표 5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출산란의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 □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3년 11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오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923145
----------	----------

제출년월일: 2023. 11. 03.  
제출자: 달서구청장  
(총무과장)

##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을 도입하고, 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2조의 2)
- 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2년미만에서 5년미만으로, 가산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 반영(안 제13조 및 별표 4)
- 다. 소속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 반영(안 별표 5)

##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2023. 9. 21.~10. 11.) 결과: 의견 없음
-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마. 비용추계서: 비해당
- 바.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아.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중 “경력직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영 제7조”로 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p>2. 공무원 이외 다른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p> <p>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p> <p>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p> <p>※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p>
---

별표 5 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u>경력직 공무원</u>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u>2년</u> 미만인 경우로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p> <p>제14조(특별휴가) ① (생략)</p> <p>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12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 ----- -- <u>경력직공무원</u> ----- ----- <u>5년</u> ----- -----.</p> <p>제1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영 제7조</u>-----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방법 (제13조 관련)

1. (생략)
  2. 공무원 이외 다른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u>10</u>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생략)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방법 (제13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 이외 다른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 -----1개월 -----  
-----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u>10</u>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현행과 같음)

# 【 관계 법령 】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7조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3. 7. 18.>

###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